#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8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이성권·배준영·안철수

조승환 • 이헌승 • 주진우

안상훈 · 조지연 · 강승규

김소희 · 김용태 · 조은희

김도읍・강명구・김 건

신성범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 법률 제 호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없다. 이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를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을 각각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확인증의"를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행정사가 사망한 후 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 제17조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2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사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를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2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 4의3.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의2.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을 한 경우
- ④ 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그 행정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신고확인증을"을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행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사회의 총회와 대의원총회 의결내용 보고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최되는 행정사회 총회와 대의원총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 ②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6조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결격사		
	유 해당 여부는 행정사 자격시		
	험의 최종 합격발표일을 기준		
	<u>으로 판단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제13조(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		
<u>금지</u> )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	<u>의 대여 등의 금지</u> ) ①		
에게 <u>신고확인증을</u> 대여하여서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		
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u>신고</u>	② <u>신고</u>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	확인증 또는 자격증을		
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③		
따른 <u>신고확인증의</u> 대여를 알	<u>신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의</u> -		
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폐업신고) ① (생 략)	제16조(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u>&lt;신 설&gt;</u>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		

② (생략)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신고 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행정사가 사망한 후 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 제17조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정사회는 총회 또는 대의 원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 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생략)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u>신</u>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3. 4. (생략)
- ② (생략)
-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지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1. ~ 4. (생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u><신 설></u>

6.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신</u>
고확인증 또는 자격증을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2조를 위반하여 금지
행위를 한 경우
4의3.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
을 누설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u>5의2.</u> 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u>경업을 한 경우</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신 설>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 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 대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6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생략)
- 2. 제13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그 행정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신고확인증 또는 자격
<u> 주</u> 을